

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359 / 전송 731-6355
 처리부서 : 재개발과(시청본관 4층) 담당 : 조 남 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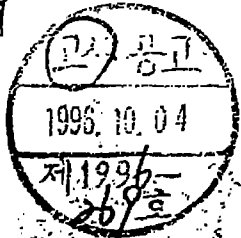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재개58551-491

시행일자 1996. 10. 4

(경유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	장
보존		10.21	
도시계획국장	전결		
재개발 과장	조남성	협조	통제관
사업 2계장	김자필	법무담당관	(고시안심사)
기안	조남성	행정계장	계획계장

제목. 도심재개발구역중 건축계획 결정

1.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사업 마포로5구역 제12-2지구의 재개발구역중 건축계획 결정에 대하여 '96년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('96. 9. 18)에서 별첨 회의록과 같이 의결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재개발구역 중 건축계획을 결정하고, 같은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관보에 고시하고,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재개발구역 중 건축계획결정 내용

지구명	구분	대지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율 (%)	연면적 (㎡)	주된 용도	층수 (지상/지하)	건물 높이 (M)
마포로 5구역	서울특별시 고시 제298호 (90. 9. 3)	2,675.30	-	-	-	-	-	-
제12-2지구	건축계획	2,795	49.20	721	32,154	업무	17/7	77.26 (옥탑 포함)
			54.12	761	35,368	시설		

첨부 :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: 건설교통부장관

제목 : 재개발구역중 건축계획 결정

원본대조필

1.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사업 마포로5구역 제12-2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도심재개발구역중 건축계획을 결정하였기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보고 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(제3안)

수신 : 총무처 장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1. 다음사항에 대하여 관보에 게재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종별 : 고시문

나. 게재명 : 도심재개발구역중 건축계획결정 고시

(마포로5구역 제12-2지구 도심재개발사업)

다. 게재근거 :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(제4안)

수신 : 중구청장

참조 : 도심재개발 과장

제목 : 도심재개발구역중 건축계획결정 통보

1. 마포로5구역 제12-2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을 별첨고시문 사본과 같이 결정 하였음을 통보하며,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내용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한 관련군부대 협의 결과를 통보하니 사업시행시 이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.

가.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내용

- 전면도로의 계획상 5차선을 3차선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공간은 녹지 또는 보도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함.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관계도면 1부.

3. 건축협의 작전성 검토결과 공문사본 1부. 끝.

(제5안)

수신 : 중구 중림동 415번지 유성빌딩 2층 203호 마포로5구역 제12-2지구

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박병욱 귀하

제목 : 도심재개발구역중 건축계획 결정통보

1.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마포로5구역 제12-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재개발구역중 건축계획결정 요청건은 별첨고시문 사본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며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내용을 통보하오니 사업시행 및 건축계획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내용

- 전면도로의 계획상 5차선을 3차선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공간은 녹지 또는 보도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함.

첨부 :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고 시 (안)

고시심사 1996.10.2 제 2회 회		
담당자	법제실사제강	법무담당관
김민	김민	[인]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269호

도심재개발구역 중 건축계획 결정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345호('79. 9. 21)로 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('81. 11. 13)로 재개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298호('90. 9. 3)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된 마포로5구역 제12-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건축계획을 도시 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중구 도심재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6년 10월 일

서울특별시 장

- 가. 사업명칭 : 마포로5구역 제12-2지구 도심재개발사업
- 나.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중구 중림동 419번지의 53필지 3,720.30㎡
- 다.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: 중구 중림동 414번지의 25필지 925.30㎡
- 라. 건축계획결정 초서

지구명	구분	대지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율 (%)	연면적 (㎡)	주된 용도	층수 (지상/ 지하)	건물 높이 (M)	비고
마포로 5구역	서울특별시 고시 제298호 (90. 9. 3)	2,675.30	-	-	-	-	-	-	
제12-2지구	건축계획	2,795	49.20 ~ 54.12	721 ~ 761	32,154 ~ 35,368	업무 시설	17/7	77.26 (옥탑 포함)	측량결과 면적 119.7㎡ 증가